

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5-1407호

남강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신고를 위한 공람공고

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65-10번지 “남강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”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신고 신청과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공람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장소로 의견서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12월 3일

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

1. 공람기간 : 2025. 12. 3.(수) ~ 2025. 12. 17.(수)
2. 공람장소 :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건축과 [☎ 051-610-4661]
[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, 3층]
남강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 [☎ 051-754-4404]
[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22번길 58, 1층]
3. 공람내용 : 남강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신고(안)
가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남강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
나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1,324.6㎡
다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: 2027. 4. / 2030. 8.
라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: 남강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(수영구 광안로22번길 58, 1층)
4. 공람도서 : 게재생략(공람장소에 비치)
5. 의견제출처 :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건축과

남강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
조합설립(경미한)변경신고(안) 공람 의견서

의견 제출자	성명		연락처	
	주소			

◇ 제출의견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제9항 규정에 의거 토지등
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
공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2025. . .

의견제출자 : (서명 또는 인)

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